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3나31317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3나313171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3. 6. 28 선고 2022가단12196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

담당변호사 박영신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판봉

변론 종결 2024. 10. 31.

판결 선고 2024. 11. 28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. 6. 28. 선고 2022가단121961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각 1/12 지분에 관하여 2022. 6. 7.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.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'2. 고치는 부분'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2면 12행의 "1999. 6. 25."을 "1995. 5. 20."로, 3면 10행의 "2002. 6. 1.자"를 "2002. 5. 29.자"로, 3면 17행의 "3억 2,696,000원"을 "316,169,000원"으로, 3면 18행 내지 19행의 "1억 37,695,000원(=3억 2,696,000원 - 1억 6,500만원)"을 "151,169,000원(= 316,169,000원 - 165,000,000원)"으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3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2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망인과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로 매매를 가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.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. 6. 7.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』

○ 제1심판결 5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⑤ 갑 제7, 9,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일 이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상당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,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문맹인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계좌 등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다시 회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. 달리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가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판사김광진

판사정주희

판사김아영

별지